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48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임호선·김윤덕·위성락

김동아 • 박선원 • 김재원

이춘석 · 김주영 · 이원택

김현정 · 오세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,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「동물보호법」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 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,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.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,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

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 임(안 제3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심리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는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 는 수의사에 대하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(이하 이 조에서 "심리 지원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4조의2(심리지원) ① 농림축산
	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
	시장·군수는 「동물보호법 <u>」</u>
	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
	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
	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
	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
	법률」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
	지원(이하 이 조에서 "심리지
	원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ㆍ도
	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제1항
	에 따른 심리지원을 「정신건
	<u>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</u>
	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
	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
	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
	<u>탁할 수 있다.</u>
	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ㆍ도
	지사 또는 시장・군수는 제2항
	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
	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

시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・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